

한반도 지하의 후견헌법*

— 소설 「총독의 소리」의 경륜론과 메이지 헌법

尹仁魯**

- | | |
|----------------------------|--|
| I. 서론: 국가 구원의 경륜론 | IV. 숨은 신=총독: 지존의 유고시, 전후
섭정의 한계 철폐 |
| II. 아나키의 필요론, “제-외-레”의 행정론 | V. 결론을 대신하여: ‘상징=천황’을 둘러싼
총독의 개념 투쟁 |
| III. 육화: 이위일체로서의 천황과 총독 |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인훈의 연작 소설 「총독의 소리」를 통해 ‘통치비밀(아르카나 임페리)’의 구체적 운용과 원리를 검토해 본 것이다. 지하에 숨어든 총독의 경륜-비밀이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매개로 하여 패전 제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제1원리로 설정된 맥락을 분석하면서, 효력정지된 「메이지 헌법」이 총독의 후견헌법으로서 참조·소환·극복되는 과정을 검토했다. 총독의 경륜-비밀은 국가의 적=아나키를 필요에 따라 계측하고 창출하면서 질서화 절차의 조리와 계기들을 배치해가는 통치합리성의 다른 이름으로서(1장), 「메이지 헌법」의 해석 속에서 이채를 발하는 ‘지존행정’의 집행 및 ‘제-외-레’의 재량적 결정과 상호작용한다(2장). 스스로를 ‘제정일치론자’로 정의했던 총독은 천황의 지고한 신성을 봉행하는, 그런 지존의 신성 아래에서 그 신성과 한 몸이 되는, 그렇게 ‘육화’된 이위일체적 힘의 보유자이다(3장). 그는 「메이지 헌법」과 「황실전범」이 설정한 한계를 철폐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섭정’으로서의 힘과 지위를 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 B5A16076927).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제약적으로 실험하며, 그럼으로써 전후 제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최종 보루로서 스스로를 정립할 수 있게 된다(4장). 전후 숨은 총독은 제국의 판도를 점령군정의 이윤 취득 구조로 재편성하는 첫 출발점으로서의 ‘상징=천황’을 개념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전용·내파한다(5장). 그렇게 총독의 경륜-비밀로 조형되는 통치관계는 한반도 남북의 집권세력을 영속적인 비상상태 쪽으로, 한반도 인민의 삶을 ‘반생반사(半生半死)’의 상태로 인도하는 통치사려의 방법이자 원천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비밀, 경륜, 한반도, 제-외-레, 육화, 섭정적인 것, 「총독의 소리」, 「메이지 헌법」

I. 서론: 국가 구원의 경륜론

통치와 비밀이 맺는 관계, 혹은 통치의 비밀과 비밀의 통치가 서로를 보충하면서 기능할 때에 설정되는 권력관계의 매트릭스. 통치의 기반석·시금석으로서의 비밀, 비밀의 경영·재생산으로서의 통치. 줄여 말해 통치-비밀^{arcana-imperii}. 이 개념의 효력과 파장을 현실의 구체적 상황들과 밀착시켜 사고하기 위해 여기 앞질러 인용하게 되는 것은 작가 최인훈의 문장들이다. 1950년에 월남했던 그가 작가로서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맥락에서 북조선의 ‘체제’ 경험을 사고했을 때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국가 수준에서의 집단은, 상당 기간에 걸쳐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절대’로 배제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그 이유 자체의 공개가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¹⁾ [“공익(公益)을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언제 공개할지 기한도 정할 수 없다고, 그러나 틀림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명한다면, 그야말로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절대적’ 규탄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 공개의 시기 또한 얼마든지 같은 이유로 연장할 수 있다. 그뿐이라. 공개하면서 정보를 인멸, 축소, 개작, 창조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보에 대응하는 물질적 형태 또한 같은 조작이 가능하며 권력주체인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권력은 마치 신학상의 섭리^{攝理} [“신의 섭리”]에 맞먹는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¹⁾ 신(학상)의 섭리 속에서 배합되는 통치와 비밀, 이와 관련된 입론들을 상호 삼투시킬 수 있는 경로 및 배치를 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게 될 텍스트는 「총독의 소리」인바, 그것은 1967년의 한반도 지하 총독부 해적라디오 전파로 송출되고 있는 총독의 육성을 기록한 것이며, 그 가상의 목소리^[Logos]는 패전 이후 22년이 지났음에도 반도에 남은 총독이 암암리^{暗暗裏}에 발하고 있는 명령, 한반도를 통해 제국의 힘을 재취득하려는 숨은 총독의 내밀한 법권^{法權/法權[Nomos]}을 이룬다.

무릇 국가는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경륜의 가슴 깊이 사무친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반도의 영유(領有)는 제국의 비밀이었읍니다. 영혼의 꿈이었읍니다. 종족의 성감대(性感帶)이었읍니다. 건드리면 흐뭇하게 간지러운 깊은 비밀

1) 최인훈, 『화두』 2권, 문학과지성사, 2008, 96쪽.

의 치부(恥部)였습니다. 오늘날 제국은 이 비밀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²⁾

총독의 통치론, 숨은 총독의 숨겨진 지배술은 국가 또는 제국을 존립시키기 위한 제1조건이자 제1동인으로서의 비밀에 뿌리박고 있다. 그런 비밀, 즉 한반도라는 통치-비밀은 다름 아닌 그 땅·대지를 제국의 영토로서 회복한다는 절대적 과업과 직결되어 있다. 그것이 절대적인 까닭은 총독에게 식민지로서의 한반도란, i) 제국의 ‘영혼=주권’이 스스로의 재생산을 꿈꿀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며, ii) 제국의 수족·신체를 이루는 1등 국민이 은밀한 육감의 쾌락 속에서 그 지위·위계를 보전하기 위한 폐타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이고, iii) 그렇게 “반도야말로 제국의 종교였으며 신념이었으며 사랑이었으며 삶”이었기 때문이며, 달리 반복컨대 iv) 그런 종교·신념·사랑·삶을 가능케 하는 “제국의 영혼의 비밀”³⁾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비밀을 잃어버린 제국 본토의 정신적·도덕적 황폐는 이른바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치유되기는커녕 더욱 극심해지고 있었던바, 총독에겐 국혼^{國魂}으로서의 주권과 그것

2) 최인훈, 「總督의 소리」, 『신동아』 1967년 8월호, 480면. 이하 「총독의 소리」(I)로 표기함. 필요에 따라 철자는 현대식으로 바꾸고 괄호 속 한자는 작은 윗글자로 제시함. 「통치와 비밀」이라는 문제설정에 접근하는 선행연구로는 황호덕, 「아카이브 밖으로: 문학·국가·비밀, 「국민문학」 비판론들에 부쳐」(2005), 『프랑켄 마르크스』, 민음사, 2008을 참조. 특히 1장의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거듭 새기면서 인용의 연대를 표시해 두고자 한다: “공적인 비밀이라니. 비밀이 과연 공적일 수 있는가. 비밀이란 그 자체의 정의에 있어서 전혀 공적이지 않고, 공적인 것이란 그 정의에 있어 전혀 비밀일 수 없다. 그런데 어쨌든 비밀인 공적 기록(secret archive)이 존재하며, 제국 혹은 통치의 서사란 어떤 의미에서 이 비밀스러운 공적 기록들의 흔적일 수 있다.”(125쪽) 데리다를 각주로 포함하고 있는 이 한 대목은 2000년대 초반에 집중됐던 「국민문학」 비판론을 재검토하는 출발선이 되고 있다. 「총독의 소리」를 분석의 중심에 놓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방향성—탈식민주의, 전후 냉전론, 아시아론, 중립론, 당대 65년 체제론, 소설형식론 등—을 확인하면서, 본 논문은 「총독의 소리」를 통치비밀과 일본의 제국헌법, 특히 ‘제1장 천황’의 여러 조문과 그것에 대한 규범적 해석 속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선행연구들의 틈새 일부분을 보강해보고자 한다: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2012, 261~313면; 서은주, 「최인훈의 소설에 나타난 ‘방송의 소리’ 형식 연구」, 『배달말』 30, 배달말학회, 2002, 199~219면; 최인훈 문학의 동아시아 표상 혹은 재현에 초점을 맞춘 망라적 연구로는 장문석, 「최인훈 문학과 아시아라는 사상」, 서울대 박사논문, 2018을 참조.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의 통치에 관한 역사학에서의 분석으로는 전상숙, 「식민지 조선 행정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정치적 자율성」, 『일본연구논총』 21, 현대일본학회, 2005, 281~310면.

3) 최인훈, 「총독의 소리」(I), 480면.

이 뿌리박은 식민지=비밀의 힘을 수복함으로써만 그같은 타락과 퇴락은 정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국가적 위기의 해제와 방지, 국가의 구제. 그것이 통치-비밀 또는 총독이 말하는 경륜-비밀의 벡터를, 그 방향과 크기 간의 상보적 합력을 규정한다. 총독적 경륜^{經綸}, 그것은 국가의 구원 또는 국력에 의한 구세를 지향하는 통치의 비밀화된 경험·능력·포부·기획력이다. 그런 경륜-비밀은 국가의 적=아나키를 미연에 계측하고 억지하는 힘, 혹은 그같은 아나키·무법상태 속에서 그것에 맞선 질서화 절차의 조리와 계기들을 정연하게 배치하고 짜나가며^經 신속하게 적출하고 낚아채는^論 기술, 그러니까 통치관계의 직조력이자 포착술이며, 그런 한에서 모종의 통치합리성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행해지는 사려의 힘, 지배의 적정선을 산출하기 위한 고려·탐지·조정·합성의 기술력이다.⁴⁾

II. 아나키의 필요론, “제-외-례”의 행정론

그같은 경륜-비밀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i) “비상태세”, ii) 그런 비상시의 결정력에 관계된 “깊은 配慮.”⁵⁾ 숨은 총독이 한반도의 남측과 북측을 가리지 않고 기획·유도·유발하는 비상시, 비밀화된 그 통치술의 경험·관록·노하우는 한반도를 “영구 분단”의 체제로, 그 영속성에 따른 안정과 그 분단에 따른 불안정을 적절히 배합하고 안배하는 기술, 달리 말해 한반도를 “전란과 혁명”⁶⁾

-
- 4) 최인훈은 「총독의 소리」가 1965년도 한일협정(“한일 국교 파동”)에 대한 반응으로서, “문학의 형식을 파괴하면서도 온몸으로 부딪쳐야 할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 파괴된 형식 혹은 방법을 요약한 것이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이다: “적의 입을 빌려 우리를 깨우치는 형식, 곧 병적이야(惡敵利我)”(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 문학과지성사, 2010, 27쪽) 최인훈은 총독을 자족적·폐쇄적 허구가 아니라 한일협정이라는 역사적·정치적 사건의 파급효과와 그 원인을 사고하기 위한 가능한 매개체로서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인훈은 총독을 ‘우리’의 현황과 한계를 비추는 동일 평면의 ‘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적에 병의하여 적의 경륜을, 즉 제국의 부활을 위한 비상시 아나키의 조직술을 구체적으로 들춰내고자 한다.
- 5) i) 최인훈, 「總督의 소리 II」, 『월간 중앙』 1968년 4월호, 415면. ii) 최인훈, 「總督의 소리 IV」, 『한국문학』 1976년 10월호, 194면. 이하 이 두 판본에서 인용할 때는 앞서 제시했던 방식으로 표기함. 단, IV에서는 괄호 속 한자표기가 아니라 전면 한자표기로 되어 있다. 이를 필요에 따라 살렸을 때는 ‘[]’ 속에 한글을 병기한다.

의 영속상태로—즉 “반도의 하늘 아래 영일^{寧日}[편한 날]이 없도록”⁷⁾—유지시키기 위한 힘관계의 조율·배치술이다. 전란 혹은 동족상잔의 동란과 혁명, 그 둘 모두는 현행 법·법치의 효력정지상태에서 규정되고 발동되는 절대적 적에 대한 섬멸의 형태인 바, 전쟁의 연속으로서의 정치라는 태제에 뿌리박은 총독의 경륜은 바로 그런 법 바깥을 설정하고 보위하는 게발트^{Gewalt}[폭(권/위)력]의 조절력이다. 총독의 경륜-비밀, 그것은 한반도를 아노미 상태로 조형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아나키 속에서만 가능할 이권의 창출과 축적을 위해 한반도 남북의 정권^{d'état}에 가해지는 숨겨진 일격^{coup}의 게발트로서, 그런 쿠-데타의 비밀스런 집행에 관여하는 세심한 사려로서 발현한다. 한반도의 아나키·무법상태를 은밀히 자연스럽게 지속시키는 기술적인 운용의 최적화된 상태를 모색하는 총독적 경륜, 그 숨은 통치는 궁극적으로/방법론적으로 다름 아닌 생사여탈권, 살리거나 죽이는 힘을 자유재량적으로 주관하고 주재하는 폭^(권/위)력이자 않으면 안 된다. 총독이 말한다: i) “너무 죽이지도 너무 살리지도 말 것.” ii) “반도로 하여금 사는 것도 아니려니와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닌 반생반사^{半生半死}의 지경에 머무르게 하여 제국의 번영을 위한 울타리로 삼을 것.”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관철될 것인바, iii) “백성이 가진 힘의 태반을 국방에 소모시킬 것. 비상태세의 이름 아래 천황제적 피라미트를 유지할 것.”⁸⁾

반쯤은 죽여놓은, 반쯤만 살려놓은 인민의 생사, 그같은 생사^{生殺}의 배합에 뿌리박은 한반도의 지하에서 총독은 제국의 이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지상의 울타리·경계선을 구축한다. 총독의 경륜, 그것은 ‘반생반사’의 통치상태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인민/대지에 침습해 있는 좀비적 생사·생사의 특정상태—산송장·언데드^{the undead}의 상태—를 통해서만 제국의 생명선^{lifeline}과 이익선·주권선^[이는 메이지 유신의 원훈 아마가타 아리토모의 지정(地政)-경제적 개념이다]의 구축에 필요한 경로들을 산출할 수 있다. 영구 분단을 위한 힘관계를 계산·견인·유지하는 총독은 동란과 혁명의 기획을 통해 아나키적 내전상태의 재생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한반도의 남북이 적대하면서 합작해야 할 내전정체^{內戰政體}의 숨은 설계자·인도자이다. 내전정체, 그것은 숨은 총독이 발하는 경륜-비밀의 집약체이며, 그 권좌는 비어 있다(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한반도

6) 최인훈, 「총독의 소리」(II), 409면.

7) 최인훈, 「총독의 소리」(II), 413면.

8) i) iii) 최인훈, 「총독의 소리」(II), 415면. ii) 「총독의 소리」(II), 409면.

남북의 정권·정치체 배후 혹은 이면에서, 그러니까 다름 아닌 ‘지하^{underground}’에서 발효되는 섭정^{攝政(regency)}의 기술인바, 지하 총독부의 수장, 숨은 총독의 경륜은 비밀화된 섭정체^{regental body}의 구축을 위한 사려이다. 영속화된 비상 태세, 영구적 내전정체로서의 섭정체. 그 신체의 신진대사를 가리키는 학명^{學名}, 한반도의 적대적 남북이 합작하고 합일하는 게발트 연관의 모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 비상시 지하의 ‘천황제적 피라미드’인바, 그것은 통치비밀의 코드명이자 지하로부터의 섭정에 액세스하기 위한 암구호^{暗口號}이다. 한반도를 통할하는 천황제적 피라미드, 그것은 법을 포함한 그 어떤 힘에 의해서도 범해질 수 없는, 법 안에 규정·한정되어 있으면서도 법·법치에 대해 외재적인, 현행법을 정지시키는 명령의 긴급성이 법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그렇게 법 안쪽과 바깥쪽의 경계를 재확정함으로써 국권의 필요를 재량적으로 조달하고 결정하는, 그리하여 기존 통치의 질서를 바로잡고 질서에 의한 통치를 쇄신해 일반화하는, 그 과정의 근원이자 목적으로서 삶과 죽음의 적정한 배합상태를 산출하는, 천황-보필의 정치체이다. 천황을 꼭짓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의 실제적 구성 및 운영의 내역이 그와 같은바, 그런 피라미드·위계체가 총독의 경륜을 온축하고 있는 모범적인 틀인 이유가 거기 있으며, 숨은 총독이 한반도의 남북을 그 틀·범형의 재생산을 위한 질료상태로 유도해 가려는 이유 역시 거기 있다.

비상시의 영구화라는 총독의 경륜, 달리 말하자면 ‘법 바깥’(으로)의 힘을 향한 비밀스런 의지. 그렇게 법·법치에 대해 외존적인^{外存的} 상태로부터 발원하는 힘과 관련하여, 그 특정한 원천 하나로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총독이 말하는 “이등공^{伊藤公(卿)}”⁹⁾, 다시 말해 숨은 총독의 동시대적인 지침으로서, 총독의 경륜-비밀을 앞질러 그것의 토대이자 지렛대가 되고 있는 공작 이토 히로부미의 헌법 해석이다. “흉한^{兇漢} 안중근”으로 대표되고 “상해 등지에서 준동하던 반도인 불순분자들의 테러”¹⁰⁾로 확장되는 제국의 리스크, 그 위험요소에 대한 범형적인 관리술을 헌법 해석 속에서 제시했던 이토는 숨은 총독의 규범적 선행자이다. 제국 일본의 초대 추밀원^{樞密院} 의장이자 초대 한국통감^{統監}, 그러니까 제국의 중추적 비밀의 통할자 이토가 「메이지 헌법」 시행 이전에 조문 해석의 형태로 남겨 놓은 문장들을, 그 헌법 제8조—“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또는 재액^{재앙과 불행}을 피하기 위한

9) 최인훈, 「총독의 소리」(I), 481면.

10) 최인훈, 「총독의 소리」(I), 481면.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가 폐회된 경우에,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에 대한 그의 해석과 결정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 제8조를 통해 칙령으로써 법률을 대신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긴급시^{緊急時機}로 인한 제-외-례^{除-外-例}를 표시한다. 이를 긴급명령의 권^權[한]이라고 한다.”¹¹⁾ 법·법치에 대해 외존적인 힘이란 이른바 “지존 행정^{至尊行政}의 대권”에 근거한 긴급명령권의 발동을, 이를 구체적 범례로 하는 (헌)법 정지적인 권위의 힘을 표시하는바, 그것은 법의 ‘제-외-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국가적 긴급을 요하는 일에 법의 힘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행의 법률과 입법적 힘을 다름 아닌 행정권의 명령을 통해 재계열화·재코드화함으로써 보충·대체하거나 인도·계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정적 추밀의 통괄자, 그가 제국의 내각 수반^{首相(head of a cabinet)}으로서 「메이지 헌법」 제9조 곁에서 내세우고 있는 행정명령론을 그같은 제-외-례의 결정에 대한, 법이 효력정지된 비상시-치하^{治下}의 상태를 재생산하는 통치 경륜에 대한 설명으로 새겨보게 된다.

무릇 행정이라는 것은 본디부터 법률의 규칙조항을 단지 집행하는 데에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률이란 일반적으로 사물의 규준을 위해 그 대[원]칙을 정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지 갖가지 사물의 활동들 하나하나에 대해 세세한 권^權의^權배와 장소에 알맞은 (임의적인) 대처·처치·조치의 권(right)을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그런 사정은 마치 한 개인이 미리 정해 놓은 마음가짐이 그의 행동 방향을 지도할 수는 있겠지만 한없이 변화하는 사정에 순조로이 응함으로써 그가 기의^機宜[시기와 형편에 알맞은 상태]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필시 임시적인 사려^{臨時ノ思慮}가 요구되는 것과 같다. 만약 행정을 법률의 단순한 집행이라는 한계 안에 머물게 한다면, 국가는 법률이 널리-텅 비어있는^曠 땅에서 그 당연한 직무에 힘써야할

11) 伊藤博文, 『帝國憲法義解』, 國家學會, 1889, 11頁(제8조의 조문은 10頁). ‘제-외-례’의 공식 영어 번역은 “exceptional cases in times of emergency”이다. 이는 조어^{造語}된 일본어 원어의 힘과 의지, 개념적 밀도 및 농도를 표출하지 못한다. 출처는 Hirobumi Ito, *Commentaries o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Miyoji Ito(trans.), Kenzo Takahashi(notice), Igrisu-Horitsu Gakko^[英吉利法律學校], 1889, p.14. 이 조어와 관련된 당대 논쟁의 전후사정에 관해서는 稻田正次, 『明治憲法成立史』(上卷, 有斐閣, 1960)의 제14장 「메이지 15년(1882) 경의 헌법문제 논쟁 I: 주권논쟁」 부분을 참조. 「메이지 헌법^[대일본제국헌법]」은 1889년 2월 11일 공포, 1890년 11월 29일 시행. 추밀원은 1888년 4월 30일자 칙령 제22호 「추밀원 관제 및 사무규정」에 따라 헌법초안의 심의를 위해 설치된 천황의 최고자문기관. 통감부는 1905년 12월 21일자 칙령 제240호 「한국에 통감부 및 이사^{理事}청^{理事庁}을 두는 건」에 따라 설치됨(조선총독부의 선행형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터이다. 그렇기에 명령이란 단지 집행의 작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한 필요^{時宜 / 必要}에 응하여 그 고유한 의사를 발동하는 것이다.¹²⁾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다종다양한 사/물들, 법의 규정력이 미치지 못함에 따라 광범위하게 남겨지게 되는 법적 미규정 지대, 말하자면 ‘법의 부재’ 혹은 법의 **결석** 상태 · **결위** 상태(영어 번역으로는 “the case of absence of law”¹³⁾). 널리-텅 비어있는 (합)법의 그 ‘광-결’한 땅, 미규정적인 법의 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i) 추밀원/내각^{중추적/정치경제적(Kameral)} 비밀의 관리소 혹은 관방(官房 · secretariat)의 머리가 해석하고 정초한 ‘지존행정의 대권’을 통해 질서화되어야 할, 그 대권의 권위 발현을 통해 통할되지 않으면 안 될 구체적 장소이며, ii) 그런 대권과 혼연일체로서 그 대권을 대행하는 행정권력의 재량적 명령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생산 · 조달 ·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실험실이자 저수지이다. 그렇기에 행정-명령이 지존의 후견으로 뒷받침될 때 국가는 스스로의 직무에 힘쓰는 중이며, 그런 후견 · 후광을 받지 못하고 법 · 법치에 구속되어 있을 때 국가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잃고 있는 중이다. 국가의 존재 · 존속을 보위하고 국가적 일 · 힘을 (되)살리는 활력의 근저로서의 비상시 행정-명령, 이를 위한 신중한 ‘사려^[prudence]’. 때와 여건에 따라 형질을 달리하는 활력적 국권의 증진, 이를 위한 ‘필요’의 판단. 판정하지 못하는 법 혹은 침묵하는 법으로 인한 위기사 · 긴급시에 무력한 법을 대신하여 판단 · 결정하고 발포 · 발화하는 임의적 행정-명령, 그것이 법으로부터 긴급히 열외^{例外}되는 정당한 제-외-례로서, 국가적 필요에 관한 사려로서 발현되는 것이다. 비상시의 제-외-례를 지렛대로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재량적 행정-명령에의 의지, 줄여 말해 지존행정의 힘을 향한 의지. 그것은 지존의 대권 아래 · 하위에 있으면서도—지존의 제1동인적인 권위의 후견을 통해—지존과 버금가게 되는 행정권력의 창출을, 지존과 행정권력 간의 이접적^{離接的}-이위일체적 섭정관계를 표시한다.

한반도의 남북을 동란과 혁명의 유발 속에서 항구적인 위기상태 · 분단상태로 인도

12) 伊藤博文, 『帝國憲法義解』, 15頁. 제9조는 다음과 같다.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그런 명령을 발하게끔 할 수 있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13頁)

13) Hirobumi Ito, *Commentaries o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p.20.

하는 자유재량적-행정명령적 계발트의 시공^{時空施工}. 다시 말해, 비밀화된 경륜의 근원이자 산물이며 시초이자 질료인 그런 폭^(권/위)력의 시공을 통해 반도인의 생사여탈을 결정선에서 조절하고 배합한다는 총독의 궁극적 방법. 그것은 그렇게 비상상태로 결정된 제-외-례를 상례화하는 과정 속에, 제-외-례로서의 비상대권을 영속화하는 공정 속에 있다. 달리 말해 천황·지존의 권위·아욱토리타스와 행정부의 권력·포테스타스가 서로 합작하여 구축해가는 상보적 이접관계 혹은 이접적 이위일체화의 힘이란, 합법 대 불법이라는 법치의 판정력이 기능 부전에 빠지는 비상시(법의 부재·결위상태)를 다름 아닌 법치 너머로부터 거둬 결정내릴 수 있는 주권적 힘으로, 재량적 생사여탈의 사려로 정초·보위된다. 비상시의 상시화, 그것이 총독적 경륜-비밀의 중핵이며, 바로 그 중심에서 확정되고 있는 것이 총독의 숨겨진 주권선, 다시 도래할 제국의 생명선·이익선이다. 달리 답하기 위해 다시 묻자면, 그런 비상시 결정의 선^{線/善}, 그것의 정당성/정통성이란 어떻게 정초되는가. 정의의 이름을 나눠 가진 그 정당성/정통성의 정초와 발현은 다름 아닌 그것의 타자, 즉 부당하고도 이단적인 것의 존재를 구분하고 적출해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i) “이단^{異端}과 사탄”이라는 아나키·아노미를 사전에 감식하고 억지하는 경찰적^{polizeilich} 내치의 재량집행 속에서만, 달리 예컨대 ii) 이단·사탄·전염병균으로서의 “불령선인^{不逞鮮人} [후테이 센징]”¹⁴⁾을 시의적절하게 적출·산출하고 산송장이 되도록 일벌·백계함으로써만 총독의 정통론은 정초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총독의 경륜-비밀은 이단적 위기의 적출과 항시적 비상시의 필요를 창출하는 통치관계에의 배려로서 가동되는 동안에만 제국의 도래를 보증하는 최종심(급)적인 정통의 보존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총독의 그런 자기 정립과 맞물린 통치의 정통성/정당성론, 그것은 지존의 적통론^{嫡統論}과 접합된다.

Ⅲ. 육화(肉化): 이위일체로서의 천황과 총독

숨은 총독은 군림하는 천황의 정통성을 ‘만세일계^{萬世一系}(만세일계)’라는 이름의 영구

14) i) 최인훈, 「총독의 소리」(I), 476면. ii) 「총독의 소리」(I), 483면; (IV), 195면과 201면.

적·순혈주의적 유일혈통에 결속시켜 다시 정의한다: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만세일계의 황실과 그 아래로 충용한 적자^{赤子}로서의 신민^{臣民}이라는 요지부동한 체계입니다. 제국은 귀족미영의 분열을 모르며 그 기만적 이원^{二元}과는 영원히 무관합니다.”¹⁵⁾ 황실의 그 피·순혈·혈통으로 이어지는 단일한 가족국가적 구성체, 다시 도래할 제국의 일원성이란 윗대로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아버지들과 그들의 부권적인 역사·연보·유훈의 지속을 통해 젖먹임받는 핏덩이 아이^[적자(세키시)]=신민, 그 부자^[오야코]관계이자 상하·보은^[恩返(은가에시)]의 교환관계로 이뤄진다. 그것은 국가적 수족의 수지부모^{受之父母} 상태로서 하나되고 연장되는 국가효경^{國家孝經}적인 공=사^{公=私} 혹은 폴리스=오이코스의 일원적 국체 구성을 표시한다. 말하자면 국체의 원리이자 형상으로서의 황-가^{皇-家}家. 통치의 정당성/정통성을 보장하는 혈통의 계발트, 적통이라는 피의 폭^(권위)력. 그것의 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귀족미영^{貴族米英}·악귀·짐승 같은 미국·영국, 달리 말해 전후 냉전기 이익분점체로서의 앵글로색슨적 국체이다. 말하자면 총독의 ‘근대 초극론’. 이단·사탄으로서의 그들 귀족미영의 국체, 그 적들의 의지를 뜻대로 좌우할 수 있을 때에만, 그럼으로써 앵글로색슨적=이분법적 가치체계를 지양함으로써만 숨은 총독의 국체는 부활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총독의 숨은 국체, 도래할 제국의 상하 일원적 통치원리는 귀족미영의 거짓 구원적인 이원성—예컨대 총독이 말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자와 피대표자의 분할—을 초극하는 힘의 기초로서, 적통-정통의 계발트에 뿌리박고 있다.

그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 총독의 만세일계론을 「메이지 헌법」 제1조—“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에 대한 주해와 겹쳐보게 된다. “신조^{神祖} 개국 이래, 때로는 흥망성쇠가, 때로는 치세와 난세가 있었을지라도 황통일계^{皇統一系}로 줄곧 이어진 보위의 융성은 천지와 더불어 그 끝이 없었다. 이 제1조는 처음으로 입국^{立國}의 대의를 제시하고, 우리 일본제국이 한 줄기 황통과 더불어 서로를 의지함으로써 시작하고 끝나며, 옛날과 지금에 영원히 걸치는, 하나이지 둘이 아닌, 항상적인 것으로서 변하는 게 아님을 가리키는바, 그럼으로써 만세에 걸쳐 군민의 관계를 환히 밝힌다.” 만세일계로 이어지고 있는, 신적인 ‘황통일계’에 뿌리박고 있는 보위·대권·통치, 그 요지부동^{搖之不動}하는 유일성·항구불변성의 체계 안에서 빛을 받고 있는 군민^{君民}간의 부자관계. 이를 달리 표현하는 것은 제1조와 그 주해를 옮긴 번역문들이다.

15) 최인훈, 「총독의 소리」(I), 479면.

이토의 명에 따라 영어 번역을 맡았던, 당시의 헌법 초안 관계자이자 이후 추밀원 서기관장이 되는 이토 미요지의 제1조 번역은 다음과 같다: “The Empire of Japan shall be reigned over and governed by a line of Emperors unbroken for ages eternal.”¹⁶⁾ 옮겨보자면, “일본 제국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황제들^[皇家]의 한 줄기 계통에 의해 다스려지고 통치될 것이다.” 만세일계, 곧 황가의 연속적 단일 가계에 뿌리박은 지배는 제1조의 일본어 원문 “統治ス^[통치한다]”라는 동사 하나로 표시됐지만, 영어판은 그 동사를 ‘reign^[군림하다(군림함으로써 다스리다)]’과 ‘govern^[통치하다]’으로 두 번에 걸쳐 겹으로(혹은 쪼개진 상태로 겹쳐지게) 옮기고 있다.¹⁷⁾ 이는 면면히 이어지는 아버지/지존의 다스림을 이른바 ‘군림’과 ‘통치’ 간의 분리/접합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새길 수 있게 하는바, 직접 통치하는 힘이 아니라 군림하면서 후견하는 지존의 힘과 그 발현은 주해 속의 ‘황통일계’ 부분을 옮긴 영어 문장에서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얻는다: “the splendor of the Sacred Throne transmitted through an unbroken line of one and the same dynasty has always remained as immutable as that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¹⁸⁾ 옮겨보자면, “유일하고 동일한 왕조의 끊임없는 한 줄기 계통을 통해 전승되는 성스러운 보위^[寶座]의 광휘는 하늘과 땅처럼 만고불변의 것으로 언제나 남아 있다.” 황통의 유일 계통으로, 불변의 ‘유훈^[遺勳]’으로 종언 없이 계승되는 보위가 ‘성스러운 광휘’로, 영광의 군림하는 힘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 ‘광휘^[splendor(영예·장려(壯麗)함)]’의 힘, 그것은 제국의 패전 이후 신의 보좌에서 인간으로 내려 온 지존과 한반도 지하의 총독이 맺는 상보적 관계를 비평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숨은 총독이 말하는 ‘영광’과 ‘영예’의 후견력에, 그것으로 뒷받침되는 반도 경영에 직결된다.¹⁹⁾

16) Hirobumi Ito, *Commentaries o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p.2.

17) 독일어판은 동사 “regieren”으로 옮겼다. 이 낱말은 ‘다스림’의 각종 성분들을 포괄하는바, ‘지배·통치·관리·운전·지도·제어하다’ ‘군림하다’ 등을 뜻한다. ‘regieren’이라는 역어는 원어 “統治ス”의 성분이 하나로 귀착되는 것이 아님을 표시한다. 제1조의 독일어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Das Kaiserreich Groß-Japan wird für ewige Zeiten von einer einzigen kaiserlichen Dynastie regiert.”(Kurt Sell, »Die Verfassungsurkunde des Kaiserreiches Groß-Japan«, in P. Posener [Hg.], *Die Staatsverfassungen des Erdballs, Unter Mitwirkung von Gelehrten und Staatsmännern*, Charlottenburg: Fichtner, 1909^[미네소타 대학 도서관 스캔본], p.924. 옮겨보자면, “대일본 제국은 유일무이한 황조^[皇統]에 의해 영원히 다스려진다.”

18) Hirobumi Ito, *Commentaries o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p.2.

만세일계의 적통을 한반도의 지하에서 승계받고 그 정통성을 수호하는 총독, 그가 실험하는 “반도경영의 비책^{秘策}”은 반도에 항상적 비상시를 창출하기 위한 “전의^{戰意} 전쟁^戰의 의지^{戰意}”²⁰⁾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었던바, 그런 사정은 반도의 영구적 내전상태를 향한 총독의 의지와 기획이 다름 아닌 “제정일치론자”²¹⁾로서의 총독에 의해 비밀리에 집전되는 밀교적 제의정치와 겹친다는 관점에서 달리 부각될 수 있다. 그 점은 총독의 통치사려 속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 제국 치하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반도인의 세대적 상황에 대한 진단 속에서 제시된다.

엠텐를 지키면서, 흔들림 없는 국체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들 반도인의 의식에는 아제국^{我帝國}의 둘도 없는 비의체험^{秘儀體驗}—아제국의 신국^{神國}임과, 아민족^{我民族}의 신민^{神民}임에 대한 종족적 환상이 때에 따라 모자라 보일 때가 문득문득 느껴지는 일입니다.²²⁾

신국으로서의 제국이란 무엇인가. 제국을 부활시키는, 제국의 재림을 이끄는 신의 왕국, 그런 신이 왕이고 아버지^父이며 주^主인 나라·가계·주종관계로서의 제국이 그것이다. 그런 한에서 제국의 국체를 이루는 신체발부^{身體髮膚}로서의 민족이 신의 인민인 것은 당연지사다. 그같은 신체구성에 있어 머리가 되는 것, 그 국체의 영혼이

19) 만세일계에 뿌리박은 다스림의 성분을 돌이키면서 하나로 옮긴 “reigned over and governed”라는 구문은 영어판에서 곧바로 반복되면서, “[성스런 광휘의] 보위^{Throne} 위에 앉은 황제가 국가의 주권과 국토·신민에 대한 통치행정^{government}을 결합하는 것”(Ito, p.3)으로 뜻풀이되고 있다. 그렇게 군림의 신성한 힘이, 그 힘과 분리/접합되어 집행되는 행정적 통치가 다시금 표시된다. 그같은 이접적^{離接的} 다스림은 제국의 국체를 창출하고 보위하는 힘의 운용법과 원리를 보여주는바, 그런 맥락에서 제1조에 대한 주해의 마지막 단락은 국토와 인민의 본질적(질료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렇게 토지와 인민은 국체가 성립될 수 있기 위한 원질^{元質}인바, 한 나라의 강토는 한 개인의 신체와 같이 뭉으로써 통일되고 완전한 ‘판도’를 형성하는 것이다.”(伊藤, 3頁) 주권과 국토와 인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체, 그 신체·유기체의 정치적 사고력은 숨은 총독에게 전승되고 있으며, 그에게 제국의 원질과 판도를 수복하는 첩경은 다름 아닌 반도의 경영 속에 있는 것이었다: “유기체가 제 몸을 잘라버림으로써 개체를 보존하는 사례는 가장 열등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래로 반도의 지배층은 구령^{舊領}에 대한 성지회복^{聖地回復}의 기운을 복돋움으로써 민중의 피학 의식을 밖으로 돌린다는 권력의 가가거겨도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I, 480면.)

20) 최인훈, 「총독의 소리」(IV), 172면.

21) 최인훈, 「총독의 소리」(I), 480면.

22) 최인훈, 「총독의 소리」(IV), 172면.

되는 것, 그 국가적 신체의 근원-머리(원수^{元首}) 자리에 놓이는 것은 무엇인가. 지존으로서의 천황이 그것이다. 제국의 그런 신체·국체가 체험하는 신의 통치·섭리가 비밀화된 제의인 까닭은 무엇인가. 그 신이 다름 아닌 숨은 신^{Deus absconditus},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이며, 후위·상위에 군림하는 신, 신적인 권위·아욱토리타스의 폭(권^권/위)력으로 발현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의 통치·섭리를 비밀화된 켈트적 의례 속에서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여럿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모종의 지성소^{至聖所} 안에서, 아무도 범해서는 아니 될 특정한 신법^{神法}에 따라, 신 아래 유일한 독생자·외아들로서 신과 한 몸이 되는, 총독의 통치술어로 말하자면 “육화^{肉化}[incarnation]”²³⁾를 통해 신과 이위일체^{Binitarian}가 되는 일이다. 그렇게 신을 대신하게 되는, 숨은 신의 섭리·통치를 신 대신 맡게 되는, 줄여 말해 신의 섭정대리 혹은 신적인 섭정자가 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자리매김되는 것, 적통-정통을 보위하는 최종심적인 수호자로서의 숨은 총독에 의해 그렇게 정립되는 것이 지존으로서의 천황인바, 그렇게 보위되는 군림의 권좌 곁에서 총독은 지존의 의지를, 현인신^{現人神}[아라히토가미]의 신성한 권위와 위광의 보좌를 받들어 봉행하고 수호하는 최종적 보필자가 되며, 그 보필의 과정은 제국의 생명선이자 주권선인 한반도를 비상시-내전정체로 유도해가는 공정과 상보적이다. 총독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제정일치론자’라는 말의 실체가 그와 같다. 그런 제정일치의 경륜을 따라 지존 아래에서 주권적 힘을 갖게 되는 총독-사제. 그는 현인신으로서의 지존에게 이른바 ‘직예^{直隸}’[칙령 제354호 「조선총독부 관제」(1910) 제3조]하는바, 현인신에의 직예란 “영광”과 “영예” 혹은 “어광^{御光}”[다스리는 빛(빛으로 다스림)]²⁴⁾으로 발현하는^[現] 인간=신의 이위일체적 육화상태^[人=神]를 뜻한다. 그렇게 직예하는, 직속^{直屬}·직보^{直報}·독보^{獨步}·독직^{獨職}하는 한에서 총독과 지존 사이에는 아무런 중개·매개·매질·이물질이 없다. 말하자면 지존과 **이접**하는 동시에 **직접**하는 총독, 지존과 총독이 이루는 직예체-이위일체-섭정체의 통치상태. 그것은 사제로서의 총독 혹은 사도적 섭정의 경륜에 따른 폭(권^권/위)력의 과부족 없는 최적화 상태인바, 그 속에서만이 신국으로서의 제국과 그 법역 안에서의 신민^[神民=臣民]됨이라는 내이션 감각의 환상은 재생산될 수 있다.

23) 최인훈, 「總督의 소리 3」, 『창작과비평』 1968년 겨울호, 627면(이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용어이기도 하다). 이하 이 판본에서 인용할 때는 앞서 제시했던 방식으로 표기함.

24) 최인훈, 「총독의 소리」(IV), 177면.

Ⅳ. 숨은 신=총독: 지존의 유고시(有故時), 전후(戰後) 섭정의 한계 철폐

통치비밀의 한 용어로서의 ‘제정일치론자’, 그것은 신국=제국이라는 신의 섭정체 body of regency를 주재·주관하는, 신의 섭리·섭정을 대행·봉행하는 총독 vice-roy[부(副)-왕]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다른 이름이었다. 칙령에 따라 지존 아래에 직예·직속하게 되는 총독·부섭정의 통할권과 관련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은 다시금 메이지 제국(=신국)의 헌법, 그 제17조를 이루는 두 문장 가운데 하나이다: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名=於テ 대권을 행한다.” 이를 통해 정립되는 해석과 결정은 다음과 같다.

공손히 살피건대, 섭정은 천황의 일을 섭행^{攝行}한다. 그렇기에 무릇 지존의 명분^{名分}을 제외한 일체의 대정^{大政}은 모두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지며, 그런 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천황과 전적으로 같다. 이는 다만 제75조^[‘섭정은 헌법 및 황실전범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의 경우에서만 제한될 뿐이다. 천황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천황을 대신하여 행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렇기에 섭정의 정령^{政令}^[행정명령]이란 곧 천황을 대신하여 선포한 것이 된다.²⁵⁾

‘천황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혹은 부재하는-숨은 신적인 힘의 서명^{署名} 아래에서, 그렇게 군림하는 지존의 후견·서명날인^{捺印} 아래에서 행해지는 통치, ‘섭행’되는 섭정체. 섭행하는 섭정 혹은 섭행의 섭정관계란, 후위·상위에서 비밀리에 불어넣어지는 귓속말^[La parole soufflée]에 따라 행사되는 신적인·섭리적인 통치의 상태를 표시한다. 그같은 귓속말로써, 그런 말·로고스로서 발현하는 것이 천황의 이름인바, 그런 사정을 집약한 개념으로 새겨놓게 되는 것이 저 ‘지존의 명분’이다. 그것은 천황의 이름 혹은 현인신의 서명과 더불어 제국의 통치술·통치술어이자 제국=신국의 섭행술·섭정술어인바, 군림하는 지존의 명분은 섭정이 대행하는 통치로서의 섭행과는 구분·분리·이격되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이접되어 있어야 한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Rex regnat sed non gubernat}, 라는 관용구를 하나의 원천으로 하여 발원하는 이접상태의 네체시타^{necessità}, 그것은 다른 아닌 국가의 필요이며, 그런 필요의 왕국을, 그런 필요에 의해 필연화되는 최종목적으

25) 伊藤博文, 『帝國憲法義解』, 24頁(제17조의 조문 역시 같은 곳).

로서의 신국=제국을 정초·보위하는 (원)동력이자 (부)산물이다. 그 이접상태 속에서 지존과 섭정 모두는 면책의 근거와 이유를 취득하는바(그런 이접의 상태 속에서 섭정을 통할 수 있게 되는 지존은 직접 친정^{親政}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섭정은 지존의 이름=후견으로부터 붙여넣어진 껍속말의 로고스/노모스를 대신 주재하였으므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같은 모종의 군주무답책^{君主無答責} 혹은 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의 상태를 창출·유지하지 않고서는 섭정과 지존 간의 이접적 관계는 애초부터 구성될 수 없는 것이다.²⁶⁾ 지존의 명분, 뜻대로 풀자면, 지존의 쪼개져·나뉘지는^[分(분할되고 할애되는)] 이름, 지존에 의해 서명된 이름^[名]을 나눠 갖게^[分有] 되는 총독. 그렇게 이름의 분-유를 통해 행해지는 이위일체적 섭행·섭정관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메이지 헌법」 제75조였으되, 총독의 경륜과 관련하여 그 조항으로부터 촉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총독의 패전 이후, 숨은 총독의 전후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메이지 헌법」 제17조의 나머지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섭정을 두는 일은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곁에서 정립되는 해석과 결정은 다음과 같다. “섭정을 두는 일은 황실의 가법^{家法}에 따른다. (...) 섭정을 두는 일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황실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 신민들이 논의할

26) 이 면책·무책에 관한 연구는 이후를 기약하면서, 여기서는 발표 시기의 상징성 혹은 결정성에 따라 두 개의 텍스트를 제시해 놓는다. 丸山眞男, 「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 『世界』 1946년 5월 5호(그러니까 천황의 인간 선언 및 「일본국 헌법」의 공포 직후에 제기됐던 ‘무책임의 체계’론으로서); 樋口陽一, 「君主無答責原則と天皇」, 『ジュリスト』 1989년 5월 933호(인간임을 선언한 그 천황이 89세의 나이로 사망한 직후의 면책근거론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을, 그리고 본 논문의 선행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두 텍스트를 뽑자면 다음과 같다. 이마이 히로미찌, 「긴급권국가로서의 ‘메이지 국가’의 법구조: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김창록 역, 『법사학연구』 27, 한국법사학회, 2003, 139~163면. 김항, 「예외적 예외로서의 천황」, 『제국일본의 사상: 포스트 제국과 동아시아론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창비, 2015, 39~86면. 뒤이어질 분석을 위해, 한 가지 언급해 놓을 것은 천황 면책의 근원을 이루는 것을 총독이 말하는 ‘황실(천황)의 무궁성(無窮性)’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습니다. [건국신화에 근거하는] 皇祖의 무궁한 聖寵은 버림 없이 이 적자들의 대지를 건너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제정일치론자로서 본인은 비로소, 저 지옥의 불^[원자폭탄 투하를 뜻함], 기억의 골짜기를 태우는 불에 맞불을 지른 한 가닥 均衡의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최인훈, 「총독의 소리」 IV, 172쪽. 강조는 인용자) 이는 헌법 조문 해석에 한정되지 않는 천황의 권위, 아니 그런 해석의 근원을 규정하는 지점이다. 천황의 무궁한 권위와 그것을 대행하는 권력이 맺는 관계에 관해서는 윤인로, 「무궁극적인 것과 제정일치」, 『동방학지』 202,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3, 205~224면. 더불어, 스즈키 마사유키,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역시도 참고될 수 있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디 천자의 병환으로 정치를 친히 베풀 수 없게 되는 일은 드물게 보이는 변국^{變局}[변란정국]으로서, 그런 시국 안에 국가동란^{國家動亂}의 계기 역시 잠복해 있다.”²⁷⁾ 여기서 섭정의 필요는 i) 천황의 신변에 특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ii) 천황의 혈통을 나눠 가진 황실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iii) 만약 그런 결정이 신민들의 공론에 맡겨진다면 다름 아닌 아나키·국가동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었다. ‘황실의 가법’, 그러니까 적통의 피로 결속된 황가^{皇家}·황족 집안의 법이 다름 아닌 「황실전범」(1889)이며, 천황 일가의 (정치)제도적 존립과 운영을 위해 고안된 내부 지침이자 규준으로서의 「황실전범」은 그 극한에서 지존의 몸과 국체를 일체화하고 그런 일체상태를 깨는 국가동란이라는 이름의 아나키를 억지하는 경찰적인 결정력을 황실로부터 도출한다(반복컨대, 황실이라는 밀실로부터의 도출이지 인민이 모인 광장으로부터의 도출이 아니다). 말하자면 적통·신성가족의 폴리차이적 내규로서 「황실전범」은 핏덩이 아이·인민의 수를 세고 먹이며 거두는 아버지 일가의 가정관리술=오이코노미아를 제안하고, 황실이라는 정치적 밀실의 경제·경영을 위한 세부 지침들과 거시적 범형들을 제시한다. 그런 한에서 그것은 국체·정치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적 중추규약인바, 「황실전범」과 「메이지 헌법」은 국체의 수호를 위한 법역의 안팎을 상보적이고 이중적으로 정비하고 다져가는 준거이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점령군정에 의해 그런 황실 일가의 특권이 해체된 패전 이후, 섭정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황실의 정치적 규약으로서의 「황실전범」은 폐지·교체되었다. 숨은 총독의 전후, 그것은 「황실전범」이라는 모종의 신성가족적 철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시공간인바, 그렇게 숨은 총독은 자신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던 위력과 힘을, 즉 지존에의 직예로부터 발원하는 섭정적 역량을 제국=신국의 정통 및 적통을 수호하는 최후적인 힘이자 최종적인 심급으로 발효시킬 수 있게 된다. 숨은 총독의 전후, 그것은 달리 말해 지존에게 발생한 모종의 변고^{變故} 혹은 유고^{有故}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닌 상태, 예컨대 현인신의 일명 「인간 선언」[「신(新)일본 건설에 관한 조서」가 원명. 1946년 1월 1일자 천황의 조칙 문건으로, 산=인이 아니라 인간임을 공개·공표함]이 반복 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 탈^脫신성에 따른 정신적 해이상태, 신성의 포기애 따른 탈정치적=경제주의적 인간의 양산상태이다. 이위일체화되어야 할 지존의 후견력이 영구히 폐절된 상태, 귀축미영과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27) 伊藤博文, 『帝國憲法義解』, 25頁.

지존-유고시의 무법상태가 숨은 총독의 전후를 집약하는 것이다. 그의 전후 프로젝트란 지존과 섭정이 이루는 섭행관계의 원상회복^[아포카타스타시스]을 위한 첩경이자 비책이라고 할 수 있을 한반도의 재식민화 프로그램이고, 그것에 연동되는 생사여탈의 조절 프로세스이며, 다름 아닌 내전^[스타시스]을 유발·유지함으로써 냉전적 현행질서의 종말·끝^[아포칼립스]을 시작하려는 힘, 그렇게 제국=신국의 도래·권토중래를 앞당기는 메시아(주의)적 힘으로 발현한다(그런 힘이 총독의 제정일치론을 달리 압축하여 표시한다). 패전 이후, 숨은 총독은 일시적 변란정국에 한정된 채로만 허용됐었던 평상시 섭정의 필요 너머를 향하면서 그같은 「메이지 헌법」의 제약 및 구속 규정을 넘어서는 바, 총독의 전후 공간은 지존에 직예하는 총독 자신의 이위일체적 섭정력을 무제약적으로 발양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실험실로 자리매김된다. 그 실험실에서 산출되는 경륜-비밀에 근거하여, 숨은 총독은 제국=신국의 생명선·부활선으로서의 한반도를 남북이 합작하는 내전정체로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암약하는 자신의 파르티잔 활동을 전후적^{戰後的} 숨은 신을 받드는 비의적인 봉행으로서, 제정일치의 자유자재한 힘으로서, 도래할 제국의 메시아성을 주재하는 사제직·섭정직으로서 비밀리에 상시 화하고 자유재량화하고자 한다.

전후 숨은 총독이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곳은 점령군정 치하에서 새로 제정된 「일본국헌법」^[1946년 11월 3일 공포]의 국민주권/상징천황 아래가 아니라 여전히 「메이지 헌법」의 지존 아래이다. 전후 총독에게 「메이지 헌법」은 자신의 현존재 근거이자 도래할 제국적 국체의 기반석이었던바, 숨은 총독의 현재와 도래할 미래를 동시에 규정짓는 「메이지 헌법」은 「일본국헌법」의 배후에(혹은 무의식적 심층에) 잔존하면서 항시 속삭여지는 귓속말로 그 효력을 발효시킨다. 그런 귓속말을 취사선택하는 숨은 총독은 지존의 유고상태(제국의 빈사상태)를 타개할 필요에 관한 유일한 해석자로서, 그 신성한 필요에 수반되는 당위·정당성·정의에 관한 최종적 결정자로서, 섭정의 헌법변경을 금지한 「메이지 헌법」 제75조와 같은 제한 규정들을 무효화하게 될 것이었다. 지존의 이름 아래 지존과 하나되었을 섭정으로서의 총독은 잔존하는 「메이지 헌법」에 대한 변경—필요에 따른 뜯어 고침^{mutatis mutandis}[재량적 준용(準用)]—을 통해, 달리 말하자면 패전 제국의 헌법(=전후 숨은 신의 국법)에 대한 무타티스 무탄디스의 경륜을 통해 제국=신국을 다시 회복코자 하는 것이다. 그런 회복의 긴급한 필요에 비춰보게 되는 것은 천황의 긴급칙령권을 제한하려는 「메이지 헌법」 제8조이며, 그것을 발판으로 행해지는 해석과 결정의 벡터이다.

i) 제8조.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또는 재액^[재앙과 불행]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가 폐회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을 대신하는 직령을 발한다.

ii) 만약 정부에 그 특권을 맡김으로써 손쉽게 의회의 공의^{公議}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삼거나 손쉽게 기존의 법률을 파괴하기에 이른다면, 헌법의 규정조항은 공문^{空文}으로 돌아갈 것이며 단 하나도 신민을 위하여 보장을 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 제8조는 의회로 하여금 그 특권의 감독자가 되게 하고 긴급명령에 대한 사후의 검사와 승낙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²⁸⁾

천황의 긴급직령, 혹은 천황을 보필하면서 발해지는 행정부의 긴급시 지존행정의 활동·발동. 그것은 법을 대신하는, 법 너머에서 행해지는, 법에 앞서는, 법의 피안을 향해가는 공안(공공적^[=국제의] 안전)의 필요를 따르느바, 제8조와 그 해석은 그런 긴급한 필요에 관한 결정을 제약하는 헌법정치 안팎의 브레이크 장치들을 환기시킨다. 예컨대 i) 사후적일지언정 긴급권의 효력에 대한 감독·심사·승인의 힘을 갖는 의회, ii) 추밀원 곧 원로·원훈^{元勳}의 합의제 자문단에 의한 사전 심의·부결, iii) 법제국^{法制局} 곧 사법전문 관료집단에 의한 필요의 법리 검토와 불필요 판정. 그런 상황은 저 ‘제-외-례’에 관한 결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견제와 균형의 상태인 동시에 ‘누가 결정하는가’^{Quis judicabit?} 누가 해석하는가^{Quis interpretabitur?}라는 물음의 답을 둘러싼 알력과 투쟁의 상태이기도 하다. 그런 균형이 깨지고 투쟁이 종결될 때, ‘메이지 헌법’은 텅 빈 ‘공문’이자 죽은 “데드 레터^{dead letters}”²⁹⁾가 되고 말 것이었다. 필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반복된다. 패전 이후의 총독, 숨은 총독의 전후란 무엇인가. 지존의 유고시를 주관하는 힘으로서, 지존-섭정 간의 이위일체적 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수호자로서, 그런 한에서 무타티스 무탄디스의 경륜-비밀을 가동시킬 수 있게 되는 총독은 텅 빈 공문의 상태를 모종의 타불라 라사^{Tabula rasa}[텅 비어있는 판(板)]로, 통치재량의 백지수표로 형질전환시키는바, 그럼으로써 헌법의 수취인불명·배송불능의 데드 레터·사문^{死文}상태는 저 ‘반생반사’와 같은 생사의 특정 배합을 철칙으로 하는 최적화된 통치상태로 조형된다. 전후-평화라는 전쟁-정치의 지속상태, 지존의 유고상태와 법의 침

28) 伊藤博文, 『帝國憲法義解』, 11頁.

29) Hirobumi Ito, *Commentaries o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p.15.

목상태 속에서 총독은 자신의 섭정적 준용권이 제-외-례의 결정적인 폭(권/위)력으로 정립되게 만드는 법의 피안을, 자신이 기도하는 무타티스 무탄디스의 경륜이 국체의 안전보장에 직결된 살아있는 불문법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필요의 대지를 그같은 데드 레터의 상태에서부터 취득하게 될 것이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상징=천황’을 둘러싼 총독의 개념 투쟁

신국으로서의 제국, 그것의 회복을 위한 방책과 진단으로서 해적-라디오방송의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는 숨은 총독의 전후를 다시금 특징짓게 한다:

i) 비록 김일성 그 자신이 신자^{臣子}로서 만승^{萬乘}[1만대의 군사용 수레(천자의 지위)]을 감칭함[“김일성 천황”]은 가중하되 그렇게 함으로써 반도의 북반부에 제국의 근본적 통치 구조의 틀을 온존하고 있는 공은 아니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황조^{皇祖}를 본 떠서 갖추고 있으니, 이 아니 충실한 제국의 신민이며 폐하의 적자 입니까.

ii) 김일성체제는 우리 제국의 국체를 작은 규모에서 본뜨고 있는 象徵的天皇制[상징적 천황제]로서의 내실을 더욱 굳혀 가고 있으므로, 제국으로서는 행여 김일성체제에 변화가 오는 일이 없도록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³⁰⁾

배후에 은닉되어 있는 헌법, 말하자면 후견헌법으로서의 「메이지 헌법」에 뿌리박은 총독의 위와 같은 말들을, 반도의 지하-후위로 숨은 섭정자 총독에 의해 전후 「일본국헌법」 제1조에 가해지고 있는 특정한 해석으로 새기게 된다(먼저, 그런 해석-일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제1조를 다른 글자체로 표나게 제시해 놓는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象徵[symbol]}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인바, 그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국민의 총의**^{總意}에 기초한다”³¹⁾). 그 섭정적 해석-투쟁의 결정에 따를 때, 한반도

30) i) 최인훈, 「총독의 소리」(II), 413면. ii) 「총독의 소리」(IV), 194면.

의 북쪽은 ‘공산당’의 겉모습을 취했음에도 제국 일본을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그 본^本을 뜨고 있는(예컨대 국가총동원의 군국체제, 신성 참배, 거국일치 내각 및 거수기 정당의 운용, 친체제적 예술 공작, 가미카제^{神風} 특공정신에 근거한 전투태세를 달리 반복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다름 아닌 ‘상징적 천황제’의 본질을 계승·보위하고 있는 모종의 서브-제국^{subimperialism}으로 자리매김된다(이때의 ‘서브’란, ‘아[류]-’라는 통상적 의미 너머에서 밑·하부·지하라는 뜻과 함께 그것에 결속된 교체·대신함·후보됨의 힘을 표시하는 접두사로 새겨야 한다). 열도의 본토에서 상징화/픽션화되고 있는, 그렇게 실질적 이름·명분이 소실되어 아무런 통치도 발현시킬 수 없게 되고 있는, 말뚝 그대로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진 천황 아래에서 그 천황을 대신하고 있는 ‘김일성 천황’. 총독의 전후라는 특정 시점에서 반도의 북쪽 서브-천황의 체제는 지존과 그 국체의 적자^{赤子/嫡子}로서, 「일본국헌법」 속의 상징에 구속된 폭^(권/위)력의 본질을, 상징에 제약받는 지존적 힘의 원상^{原狀}·Urbild^[원·이념]을 환기·기립·기동시키며, 그럼으로써 도래할 제국의 이익에 봉사한다. 미군정의 점령이득을 위해 고안된 전후 통치의 연착륙(안정화·원활화) 프로젝트로서의 상징=천황은, 그렇게 제국의 재립을 위해 숨은 총독이 행하는 ‘개념(을 둘러싼) 투쟁’ 속에서, 그 투쟁의 근거지로서의 한반도-지하라는 제국 국체의 비밀실험실 속에서 전유·전용·내파된다. 지하의 총독이 진단하는 서브-천황제로서의 한반도 북쪽의 통치체제는, 상징 속에서 무실화^{無實化}되고 융해되어버린, 상징의 칼날에 단두되고만, 그렇게 신=인의 일체상태를 포기한 전후 일본의 상징천황제를 전위시킬 수 있게 하는 실효적 준거이자 척도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인간 천황은 상징 아래 혹은 상징 너머의 구체적인 자기 신체(신진대사하는 국체)를 한반도의 북쪽이라는 실효적인 영토로부터 재취득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 과정, 숨은 총독의 경륜-비밀이 집중적으로 투하됨으로써만 기도될 수 있는 그 과정/소송이란, 「일본국헌법」의 공포^{公布/恐佈} 앞에서 ‘절도^{節度}를 중시함’이라는 금언(1946년 쇼와 21년 11월 3일자 천황 히로히토^[재위 1926년~1989년]가 내린 「일본국 헌법 공포의 칙어」 속의 구문)으로 점령군정과 타협하게 되는 천황, 절도 있는 절충 속에서 적정선의 통치 지분^{持分/知分}을 안배 받게 되는, 거기서 안분^{安分}지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렇게 제국의 주권선이 양도됨으로써 더 이상 지존의 ‘명분’을 행할 수 없게 되는

31) 「日本国憲法」, 1946. 11. 3.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https://www.digital.archives.go.jp/>), 2022. 10. 13. 접속.

천황, 서명·날인하여 나눌 수 있는 이름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는 무명화^{無名化}된
천황·천황제를 기존의 섭정체로 원상회복시켜 갈 것이었다.

투고일: 2023.04.10

심사일: 2023.06.01

게재확정일: 2023.06.20

참고문헌

- 최인훈, 「總督의 소리」, 『신동아』 1967년 8월호
_____, 「總督의 소리 II」, 『월간 중앙』 1968년 4월호
_____, 「總督의 소리 3」, 『창작과비평』 1968년 겨울호
_____, 「總督의 소리 IV」, 『한국문학』 1976년 10월호
_____,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 문학과지성사, 2010
- 稻田正次, 『明治憲法成立史』 上卷, 有斐閣, 1960
樋口陽一, 「君主無答責原則と天皇」, 『ジュリスト』 1989년 5월 933호
丸山眞男, 「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 『世界』 1946년 5월 5호
伊藤博文, 『帝國憲法義解』, 國家學會, 1889
「日本国憲法」, 1946. 11. 3.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Hirobumi Ito, *Commentaries o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Miyoji Ito(trans.), Kenzo Takahashi(notice), Igrisu-Horitsu Gakko^[英吉利法律学校], 1889
Kurt Sell, »Die Verfassungsurkunde des Kaiserreiches Groß-Japan«, in P. Posener [Hg.], *Die Staatsverfassungen des Erdballs. Unter Mitwirkung von Gelehrten und Staatsmännern*. Charlottenburg: Fichtner, 1909^[미네소타 대학 도서관 스캔본]
- 스즈키 마사유키,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 체제’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21
- 김 항, 「예외적 예외로서의 천황」, 『제국일본의 사상: 포스트 제국과 동아시아론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창비, 2015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2012
서은주, 「최인훈의 소설에 나타난 ‘방송의 소리’ 형식 연구」, 『배달말』 30, 배달말학회, 2002
이마이 히로미찌, 「긴급권국가로서의 ‘메이지 국가’의 법구조: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김창록 역, 『법사학연구』 27, 한국법사학회, 2003
윤인로, 「무궁극적인 것과 제정일치」, 『동방학지』 202,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3
장문석, 「최인훈 문학과 아시아라는 사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8
전상숙, 「식민지 조선 행정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정치적 자율성」, 『일본연구논총』 21, 현대일본학회, 2005
황호덕, 「아카이브 밖으로: 문학·국가·비밀, ‘국민문학’ 비판론들에 부쳐」(2005), 『프랑켄마르크스』, 민음사, 2008

The Guardianship Constit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The Statecraft of the novel “Voice of the Viceroy” and the Meiji Constitution

Yoon, In-ro

This article examines the specific operation and principle of ‘Arcana Imperii’ through Choi Inhoon’s novel “Voice of the Governor-General”. By analyzing the process by which the governor’s theory of government operates through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ontext in which it is set as the first principle to restore the defeated empire will be analyzed. In addition, the suspended “Meiji Constitution” was defined as the Governor-General’s guardianship constitution, and the process of summoning and overcoming it by the Governor-General was reviewed. His economy-secret is another name for the governmental rationality that creates the enemy of the state = anarchy as necessary and arranges the occasions of order (Chapter 1). It interacts with the execution of the ‘supreme administration’ referred to in the “Meiji Constitution” and the discretionary decision of ‘exceptional cases in times of emergency(除-外-例)’(Chapter 2). Governor-General defined himself as a ‘Theocracyist’, is the holder of the ‘incarnated’ two-personal power, who administers the supreme divinity of the emperor and becomes one with the divinity under such a supreme divinity(Chapter 3). By removing the limits set by the “Meiji Constitution”, he experimented with his power and status as a ‘regent’ unrestrictedly, thereby establishing himself as the final bulwark to protect the legitimacy of the post-war empire(Chapter 4). The governor-general is trying to stop the profit-taking structure of the occupation military government by imploding the ‘symbol=emperor’ as the object of conceptual struggle(Chapter 5).

Key Words : Secrets, Statecraft, the Korean Peninsula, Exceptional cases in times of emergency, Incarnation, the Regental, “Voice of the Viceroy”, “Meiji constitution”